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69622(본소), 2020가단69639(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금반환청구및채무부존재확인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1. 10. 19.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93,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1. 27. 주식회사 E(다음부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도록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E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관련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장소장 직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1. 공사명 : F 야간관광 콘텐츠 도입
2. 공사장소 : G 캠핑장 내
3. 공사기간 : 2019. 11. 27. - 사업 준공까지
4. 계약금액 : 165,000,000원
공급가액 :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 15,000,000원
5. 공사범위 : 기초 공사, 복구공사, 지반조사 등 원 발주처 요구사항 충족조건
6. 대금지급 : 발주처와의 계약은 E('갑')에서 체결하며, '갑'은 협약 체결 후 대금 지급은 발주처에서 수금 완료 후 피고('을')에게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아래 내용 생략)

다. 피고는 2019. 12. 9. E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공사대금 중 일부로 115,500,000원(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20년 5월경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계약금액만 변경된 형태로 원고가 E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후행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후행 하도급계약서

1. 공사명 : F 야간관광 콘텐츠 도입

2. 공사장소 : G 캠핑장 내

3. 공사기간 : 2019. 11. 27. - 사업 준공까지

4. 계약금액 : 49,500,000원

공급가액 : 45,000,000원

부가가치세 : 4,500,000원

5. 공사범위 : 기초 공사, 복구공사, 지반조사 등 원 발주처 요구사항 충족조건

6. 대금지급 : 발주처와의 계약은 E(‘갑’)에서 체결하며, ‘갑’은 협약 체결 후 대금 지급은 발주처에서 수금 완료 후 원고(‘을’)에게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아래 내용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초 E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진행하며, 관련 공사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E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현재까지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게 알루미늄 고철 수입과 관련하여 5,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금과 함께 총 8,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투자 원금 및 그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원과 투자 원금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9, 25, 26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9. 12. 4.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5,000,000원(다음부터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115,500,000원을 지급받은 뒤, 2019. 12. 10.부터 2019. 12. 13.까지 합계 88,120,000원(다음부터 ‘피고 주장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에게 17,380,000원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금원 10,0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115,500,000원 - 위 88,120,000원 - 위 17,380,000원, 다음부터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 및 피고가 수입한 고철을 모두 처분하였음에도 이 사건 투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이를 송달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20. 7. 17.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주장 부당이득금 88,120,000원 상당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일부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기 등 혐의로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소속 검사는 2021. 9. 14. 원고의 위와 같은 혐의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원 및 이 사건 투자금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계약금액만 변동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후행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다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E를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피고로부터 피고 주장 부당이득금 88,120,000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일부만 사용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반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원고의 사기 등 혐의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및 관련 합의사항 등에 대한 원고 주장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E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115,500,000원 중 현재까지 미지급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한편, 원고가 2019.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5,000,000원을 지급한 뒤, 2020. 6. 9.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 아래 ‘반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해당 금원이 당초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기로 했던 카드 대금 중 일부였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비록 위와 같은 송금 내역 및 관련 내용증명우편을 제외하고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바는 없으나, 해당 금원이 실제 지급된 상황에서 원고 주장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투자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며,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투자금 5,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현장소장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주장 부당이득금 88,120,000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만 공사비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유용하였다. 또한 당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드 대금 20,000,000원 중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9. 12. 4. 피고에게 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0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주장 부당이득금 88,120,000원 및 카드 대금 미지급분 5,000,000원 합계 93,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반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주장 부당이득금 88,120,000원의 송금 경위에 대해 'E이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기에 이를 다시 지급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진행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 명의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카드 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사정에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금원 지급 경위에 대한 원고 주장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달리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등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순

1) 한편, 피고는 당초 원고가 본소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반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 역시 구하였으나, 2021. 8. 17. 변론기일에서 해당 부분을 취하하였다.